

공 고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처분사유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3. 처분대상 : (주)이지커뮤니케이션(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등록취소

5. 처분일자 : 2021. 9. 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10855호	(주)이지커뮤니케이션	121111-**56274	임*범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